

#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5. 24(화)  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5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년 5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8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(2005. 5. 23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개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『지방재정법』 제 14조제1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보조금 집행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의 명문화(안 제2조)
  -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의 기초계획, 예산집행계획 및 결산,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
-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명문화(안 제3조)
  - 위원장 : 추진위원 중 호선, - 부위원장 : 위원장이 지명
  - 위 원 : 과수농업·문화관광·예술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

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

-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예산지원 명문화(안 제10조)
  - 축제에 필요한 예산지원 지급 근거 마련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일부수정의결(만장일치)

### 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일자 및 제안자 : 2005. 05. 23.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의 6인

나. 수정이유 :
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 추진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장호원복숭아의 성과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
-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의 추가 및 변경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후 수정 의결

다. 수정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 내용 보충(안 제3조 제2항)
  - 3호를 이천시의회의원 2명으로 하고, 3호를 4호로 함.

## 8. 기타사항 : 없 음

- ※ 첨부: 1.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2. 수정안 조문 대비표